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91
----------	------

제출년월일 : 2021년 10월 1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사회투자기금 투·융자 지원을 통해 일반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 가능하며,
- 나. 코로나 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경영이 어려운 피해기업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취약노동자들의 위기극복에 기여하고 있는 바,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
(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1. 7. 22.~8. 11.)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 한은 <u>2021년 12월 31일</u> 까지로 한다.	제11조(존속기한) ----- --- <u>2026년 12월 31일</u> -----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미 첨 부 사 유 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김나영(02-2133-5477)